

9-94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03. 제정

2024. 12. 19. 개정

주무부서 : 대학원 대학원연구기획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대학원혁신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중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적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7. 3.>

1. 연구비
2. 강사 초빙료
3. 원고료
4. 자문료, 심사비 등
5. 현장지도비
6. 단기인력 인건비
7. 단순 포상금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개발, 콘텐츠 개발 등 외부·내부 전문가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강사 초빙료는 강의책임이 있는 교원 이외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수한 강의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로 개발된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시간당 강의료는 내부 전임 교(직)원만 대상으로 한다.

③ 원고료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해 내부 전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자문료, 심사비라 함은 프로그램 추진 시 발생하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대학원 혁신에 요구되는 전문가 자문 및 연구윤리·대학원생 권익강화 등을 위한 위원회, 성과분석을 위한 자문 등) 및 각종 심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시간당 금액을 말한다.

⑤ 현장지도비라 함은 각종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현장지도 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⑥ 단기인력 인건비라 함은 사업 추진 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시간당 금액을 말한다.

⑦ 단순포상금이라 함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의욕 고취 및 성과 증대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 지급기준)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지급 단가표는 (별표1)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5조(사업비 지급 세부기준) 대학원혁신사업 실무 추진을 위하여 이 시행세칙의 내용을 상세화한 사업비 지급 세부기준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11.02.>

-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12.31.>

-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1.02.>

-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3.>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2. 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개정 2021.11.02., 2021.12.31., 2022.11.02., 2024. 7. 3., 2024. 12. 19.>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 지급 단가표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세부기준		기준금액		비고
				상한 단가	지급상한액	
연구비	교내·외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구 과제		정책연구 및 TFT활동 인센티브 연구비 내규의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H등급은 100%, M등급은 80%, L등급은 60%를 지급함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가능 (이러닝 교과목 : 13주차 이상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강좌)
		ISBN이 부여되는 교재 개발		5,000,000/권		
		신규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개발		2,000,000/강좌		
		기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개편		1,000,000/강좌		
		원격 수업 (이러닝) 과정	1학점 (25분/주차)	200,000/25분	2,600,000/강좌	
			2학점 (50분/주차)	400,000/50분	5,200,000/강좌	
			3학점 (75분/주차)	600,000/75분	7,800,000/강좌	
			업데이트	150,000/25분		
		동영상 콘텐츠 개발	마이크로 콘텐츠	50,000/5분		
			업데이트	150,000/25분		
강사 초빙료 (강의, 토론 등)	해외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		1,000,000 이내 / 시간	2,000,000 / 2시간 이상	해외석학 특강 시 내부결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책정 가능
		해당 전공분야 10년 미만		500,000 이내 / 시간	1,000,000 / 2시간 이상	
	교외	공직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400,000 /시간	600,000 /2시간 이상	
		민간	교직원(대학 총장급), 기업인(상장기업 대표, 기관장), 언론인(언론사 대표)	500,000원 /시간	1,000,000원 /2시간 이상	
			교직원(대학 교무위원급), 기업체 임원, 언론인(논설위원급), 경력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400,000원 /시간	800,000원 /2시간 이상	
			교직원(대학 교원 등), 기업체 직원, 언론인, 경력 10년 미만의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원 /시간	600,000원 /2시간 이상	

구분	지급대상	세부기준	기준금액		비고
			상한 단가	지급상한액	
	교내	본교 교직원	200,000원 /시간	400,000원 /2시간 이상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로 개발된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에 한함
원고료	교내	본교 교직원	ppt기준 5,000/매 (A4기준)	300,000/ 60매이상	프로그램 개발 관련
			원고지기준 5,000/매 (200자 기준)	300,000/ 60매이상	
자문료, 심사비 등	외부 전문가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	200,000/시간	500,000/일	
		해당 전공분야 10년 미만	150,000/시간	350,000/일	
		회의참석비*	200,000/시간	300,000/일	
현장 지도비	외부 전문가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	200,000/시간	1,000,000/일	
		해당 전공분야 10년 미만	150,000/시간	700,000/일	
단기인력 인건비	행사보조	야외 행사 등	14,000/시간	810,000/월	주당 15시간 미만
		실내 행사 등	12,000/시간	700,000/월	
	사무보조	단순 서류 작업	10,500/시간	610,000/월	
	연구, 프로젝트 보조	석사학위 이상	14,000/시간	810,000/월	
		학사학위 이상	12,000/시간	700,000/월	
		학부생	10,500/시간	610,000/월	
	학습튜터	석사학위 이상	20,000/시간	1,150,000/월	
		학사학위 이상	15,000/시간	870,000/월	
		학부생	10,500/시간	610,000/월	
단순 포상금	개인		500,000/인		프로그램의 규모 및 참여 인원, 팀의 규모 등을 고려
	그룹, 팀		2,000,000/그룹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한도액(일) 금액의 1/3 적용